

제 405 호

1973.9.28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편집 : 문화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-761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시 보

차

레

이 영구보존되는 파일로

필필으로 기록되었음.

7.3

서울특별시 기록과장

◎ 훈 령

제 374 호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본부 운영 규정 중
개정 규정 3

◎ 고 시

제 157 호 도시계획사업(학교덕성여대)시행허가 3

◎ 공 고

제 170 호 1973 년도 서울특별시상주인 구조사실시 4

제 183 호 영동지구 및 영동제 2 지구
환지예정지 변경계획공람공고 5

◎ 사 령

5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훈 령

◎서울특별시훈령제 374호

서울특별시경찰국수사본부운영규정을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1973년 9월 26일

서울특별시경찰국수사본부
운영규정중 개정규정

서울특별시경찰국수사본부운영규정중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조중 「주무계장」을 「수사과
장」으로 한다.

제 5조 제 1항제 1호 및 제 2호를
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
4호를 삭제한다.

1. 경찰국 형사과장
2. 경찰국 수사과장 (관내에서 3
개이상의 본부설치대 상사전발생시)

제 6조 제 2호중 「주무계장」을
「수사과장」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73년 9월 26일부터
시행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57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덕성여대)

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137호 (73.8.14)

로 결정한 도시계획사업 (학교 덕성
여대)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허가
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전
설부 고시제 123호 (73.4.4)의
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
및 시행자인 학교법인 덕성학원에
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
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.

1973. 9. 26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
414-11외 90필지
2. 사업의종류및명칭 : 학교법인 덕성학
원 종합시설사업 (대학)

3. 사업시행자주소성명 : 학교법인 덕
성학원 이사장 송금선

4. 시행면적 : 44,203평 (145,278)

5. 사업기간 : 착수 73.9.

준공예정일 82.11.30.

6.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: 별첨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건물
조서 및 지번 지목 소유권 이외
의 권리명세 (별첨)

8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
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
주소 성명 (별첨)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70 호

1973년도 서울특별시상주
인구조사 실시

서울특별시에서는 오는 10월 1일을
기하여 예년과 같이 상주 인구조사를
실시합니다.

이 조사는 인구의 지역별 변동과
성별, 연령별 인구구조를 파악하여
도시계획, 환경위생, 교육, 주택, 수도
등 살기좋은 새서울 건설 및 유선
시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시정 제반
정책의 기본자료로 쓰일 것입니다.
이제 본 조사의 실시에 즈음하여
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
라며 아래 사항을 공고한다.

1. 조사일시 : 73.10.1 ~ 10.10
(기준일 10.1.0시)
2. 조사사항 : 성명, 성별 및 연령별
인구, 5인 미만사업체
3. 조사지역 : 서울특별시전역 (단
국군와 주둔지 제외)
4. 조사대상 : 상시 거주하는자 (부
재 상주자 및 외국인포함)
5. 조사원 : 해당 동직원
6. 조사방법 : 전가구방문 타계식
전수조사

1973. 9. 29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183 호

영동지구 및 영동제 2 지구 환지예정지
변경계획 공람 공고

1. 영동지구 및 영동제 2 토지 구획
정리 사업지구의 환지예정지중 일부
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
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
를 변경지정하고자 동법제 33 조의 규
정에 따라 환지예정지 변경계획을 공
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인의 공람에
공한다.

2. 변경내용조서 및 도면은 당시 도
시계획국 구획정리 2과에 비치하고 토
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한다.

1973 년 9 월 일

서울특별시 장

사 령

◎ 1973. 9. 28

국무총리 서기관 이광하
기획조정실
지방서기관에 임함
8호봉을 급함.
공무원 교육원 교수부근무를 명함

서울특별시 장